

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4. 28.>

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·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

(제14조제3항 전단 관련)

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	입증서류
1.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	가.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: 등기사항증명서, 등기필정보,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.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: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. 매매계약자 본인: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. 임대차계약자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2.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	가. 소유자 본인: 등기사항증명서, 등기필정보,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. 임차인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. 매매계약자 본인: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. 임대차계약자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3.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	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실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4.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	신용조사뢰서, 임대차정보조사뢰서 또는 감정평가뢰서
5.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	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

6.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		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
7. 법 제29 조의2제2 항제3호마	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 우	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
목에 해당 하는 자	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문서 로 신청하는 경 우	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

비고

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.